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을 증원하고, 법제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제정책국 1개 법제관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을 정하고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을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2년 6월 30일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치법규 입안 기준 연구·수립

별표 1 총계 “222”를 “224”로 하고, 일반직 계 “221”을 “22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77”을 “79”로 한다.

별표 2 총계 “222”를 “224”로 하고, 일반직 계 “221”을 “22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76”을 “78”로 한다.

별표 3 2)란을 삭제한다.

총리령 제140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법제지원국) ① ~ ⑧ (생략)	제9조(법제지원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자치법규 입안 기준 연구·수립</u>
⑩ (생략)	⑩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140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40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은 <u>2020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 --- <u>2022년 6월 30일</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22</u>	<u>224</u>	+2
·	·	·	
·	·	·	
일반직 계	<u>221</u>	<u>223</u>	+2
·	·	·	
·	·	·	
행정사무관	<u>77</u>	<u>79</u>	+2
·	·	·	
·	·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22</u>	<u>224</u>	+2
·	·	·	
·	·	·	
일반직 계	<u>221</u>	<u>223</u>	+2
·	·	·	
·	·	·	
행정사무관	<u>76</u>	<u>78</u>	+2
·	·	·	
·	·	·	